

瑞山市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2002. 3. 27  
총무위원회

**1. 審査經過**

가. 提出日字 : 2002. 3. 22

나. 提出者 : 瑞山市長

다. 回附日字 : 2002. 3. 22

라. 上程日字 : 2002. 3. 27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稅務課長 文哲柱)**

**가. 提案理由**

- 자동차세 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 되어 있어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능하여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고,
- 농업소득세의 신고기한이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로 되어있어 법인의 경우 결산작업이 끝나지 않아 농업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어 신고기한을 5월 31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이 매년 6월 1일과 7월 16일~7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도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을 매년 6월1일과 7월 16일~7월 31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 나. 主要骨子

-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 규정 신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 농업소득세의 신고기한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에서 5월 31일까지로 개정
- 건물분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 개정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기 : 매년 7월 16일~7월 31일)

##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시세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부분과 상위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 먼저, 자동차세 관련으로 자동차세의 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나 소유자 사망후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가 불가능한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순서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정확한 세원 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 또한 농업소득세와 건축물분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지방세법에서 규정한대로 조정한 것으로서
- o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 242 호
의 결 년 월 일	2002. 3. . (제 회)

##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2. 3. 22.

#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2002. 3. 22.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의안 번호	252
----------	-----

## 1. 개정이유

- 자동차세 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 되어있어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능하여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고,
- 농업소득세의 신고기한이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되어있어 법인의 경우 결산작업이 끝나지 않아 농업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어 신고기한을 5월 31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이 매년 6월1일과 7월16일~7월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도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을 매년 6월1일과 7월16일~7월31일로 변경하려는 것 임.

## 2. 주요골자

-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 규정 신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 농업소득세의 신고기한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에서 5월 31일까지로 개정
- 건물분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 개정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 기 : 매년 7. 16 ~ 7. 31)

## 3. 참고사항

### 가. 근거법령

- 지방세법제 196조의3(납세의무자), 동법제 208조(신고와 납부), 동법제 189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 행정자치부 표준안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02. 2. 25 ~ 3. 16(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제시사항 없음.

# 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제50조1항중 “1월31일”를 “5월31일”로 한다.

제90조의 표중 과세기준일란중 “매년5월1일”을 “매년6월1일”로 하고, 납기란중 “매년6월16일~6월30일”을 “매년7월16일~7월31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36조(납세의무자) 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u>&lt;신 설&gt;</u></p>	<p>제36조(납세의무자) ①----- ----- -----.</p> <p>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 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li> <li>2. 호주승계인</li> <li>3. 연장자</li> </ol>																		
<p>제50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50조(신고와 납부) ①----- ----- 5월 31일-----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0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과세대상</th> <th style="width: 20%;">과세기준일</th> <th style="width: 60%;">납 기</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년5월1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년6월16일~ 6월30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토 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년6월1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년10월16일 ~10월31일</td> </tr> </tbody> </table>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축물	매년5월1일	매년6월16일~ 6월30일	토 지	매년6월1일	매년10월16일 ~10월31일	<p>제90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과세대상</th> <th style="width: 20%;">과세기준일</th> <th style="width: 60%;">납 기</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년6월1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매년7월16일 ~7월31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	매년6월1일	매년7월16일 ~7월31일	-----	-----	-----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건축물	매년5월1일	매년6월16일~ 6월30일																	
토 지	매년6월1일	매년10월16일 ~10월31일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 기																	
-----	매년6월1일	매년7월16일 ~7월31일																	
-----	-----	-----																	